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 에서도 지방계약법 제6조부터 계속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원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됨을 표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상대자와의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행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부

과처분 행위 등은 행정법의 집행으로서 행정청이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하는 행정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유일한 행정처분행위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처분만 행정소송의대상이 될뿐 나머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행위는 민사소송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96.12.30 누 14708)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자.

현재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있는데

공사의 경우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계약보증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등과 함께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계약문서로 하고 있다.

물론 소액공사나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는 계약문서가 위 경우보다 계약문서가 다소 다를 수도 있다. 문제는 위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에 발주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동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본조문의 취지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판례〉 계약금액 감액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90.11.28, 사건 90-다카 3659)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하는 행위는 계약의 특수조건에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행되는 것과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사인간의 계약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 복리추구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므로 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지방계약법령에 엄격하게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고 예산집행의 공익성·공정성·공정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지방계약법 제6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조문의 의미는 국제입찰을 하는 경우에 외국의 입찰자에게 우리나라 입찰자보다 다르게 입찰조건 등을 정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국제입찰을 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현장이 있는 해당 시도지역사업자에게 40%이상의 공동도급 시공참여를 의무화)을 입찰공고에서 정한다면 해외업체는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업자와 공동도급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국가나 공급자에 대하여 물품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특정 공급자에 대하여 특별우대조치를 해서는 안되는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내국민 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을 의미한다.

다음은 법제7조와 시행령 제6조의 의미를 알아보자

[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본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는 기관), 전문회계법인, 대학의 연구소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거나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외부에 위탁(Outsourcing) 할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이나 시공품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년 9월부터는 시·도별로 계약심사 부서가 설치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조문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해지방자치단체 내에 회계관직인 경리관에게 위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계약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내에서도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이 복수로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편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에게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한편, 다른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공무원이나 국가기관, 전문기관에게 계약사무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계약의 절차를 보면 원가계산 → 원가검토 → 예정가격의 결정 → 계약방법결정 → 사전심사 → 입찰 → 심사 → 계약 → 감독 및 검사 → 대가의지급등의 큰 흐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일련의 계약과정을 통째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계약사무의 전부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전경비로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이전경비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을 지방재정법 제 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공기업이나 민간기관에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이 안되므로 예산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법 7조 제2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계약사무의 위탁이 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은 지방의 특성을 담은 지방계약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주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음은 시행령 제6조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 사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보통 시군의 경우 부단체장이나 관련국장이며 일부에 대하여는 시군의 재무과장이나 회계과장인 분임경리관에게 처리가 위임된다.

이 경우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은 사무 중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하거나 감독을 하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해당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에게 이를 맡겨서 처리토록 하기위하여 규정된 조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검사나 감독이 아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일부를 이를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처리하지 않고 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시행령 제2항을 알아보자.

앞서 설명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제2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4호는 원가검토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3. 공익목적에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현재 폐지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 1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위탁대상 가능기관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제2호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제3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제3호는 “공익목적에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먼저 살펴보자.

第22條(必要的 檢査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분의 1 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規定된 團體등의 會計

②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

第23條(選擇的檢査事項) ①監査院은 필요하다고 認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交付하거나 貸付金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 外의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任命承認되는 團體등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關連된 事項에 關한 會計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管理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2이상 출자한 법인, 다른 법령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출연금, 기금을 일부 보조하거나 보조받은 기관으로부터 다시 보조받은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거나 임명승인 되는 기관도 포함된다.

다음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여기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전제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제18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검토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의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원가검토 기관의 설립요건은 원가계산 기관과 대등소이 하나 인력 등의 구성요건은 원가검토기관이 아래와 같이 다소 강화되어 있다.

-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원가계산) → 3인이상 (원가검토)
-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원가계산) → 3인이상(원가검토)
-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원가계산)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5인이상(원가검토)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별표8에서 정하고 있는 이공계기술자격기준과 상경계열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품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 기 준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 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제5호에 의하여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현재 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시행령 제3항과 4항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항의 내용은 위탁기관을 정하는 경우 공모절차등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임의로 선정할수 있다는 규정이며 위탁시에 위탁수수료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의 내용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등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항과 제7항에 관하여는 위탁수수료 및 보증금에 관한사항으로서 수수료는 계약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8조(계약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동 조문의 입법취지는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재래시장 등을 시공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을 대행요구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자치단체가 동 사업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격결정, 검사, 하자 관리 등에서 전문성이 매우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자체가 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2항의 규정은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의 규정에서는 대행을 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은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처리시기·사업수행 등에 탄력성이 없으며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경비의 경우 이를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중복 계상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추정가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나. 당해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다음은 추정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추정가격의 개념은 1995년도 처음 등장하였다. 정부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제입찰 등의 기준을 삼기 위하여 정의된 것이다.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은 설계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이 된다. 다만 턴키공사나 대안입찰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하기 전에 설계서가 없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 예산서상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7조의 단서로 규정한 내용 중 제1호의 내용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추정단가에 물량을 곱한 금액을 전체 추정가격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은 전체 소요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산정됨을 알 수 있다.

제2호의 의미는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로서 이는 물품의 구매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물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 4호 역시 물품구입 등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9.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는 예정가격의 작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정가격은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정가격의 결정이 당해 계약목적물량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가격의 작성절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행정안전부 예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3-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위내용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절차는 설계가격이나 조사가격이 작성된 후에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초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기초금액이 확정되면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 입찰이나 소액수의계약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을 하는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게 된다. 기초금액이 15개 작성되면 그중에서 4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적격심사나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의무적으로 작성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기초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설계가격이나 조사가격은 원가계산의 기준과 방법 등 에 따라 이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적격심사나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이 아닌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이 확정하는 것으로 가격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의 경우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적격심사나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금액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 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

2. 기초금액의 확정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
-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

3. 기초금액의 공개

-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

위 내용중 기초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원가계산 기준 등에 의하여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가감 조정해야 하며 가감조정된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초금액이 확정된 경우 이를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내에서 7개, $0\% \sim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

5.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

복수예비가격은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하여 랜덤방식으로 자동산출 되고 있어 종전에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투명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다.

다음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제1항의 경우 단서조항에 공유재산의 매각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공유재산은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제2항의 규정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수 있거나 생략해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다음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위 내용 중 전자전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소액이라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 등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에 의하여 입찰이나 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계약은 설계와 시공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시행되므로 우선 표준설계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문이며 **개산예정가격**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복구비용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2.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다음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등을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단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요물량

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하여 물품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의 내용은 공하나 물품의 제조등의 이행기간에 수년이 걸리고 사업내용은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으나 예산이 총액으로 확보되지 않는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도 예정가격은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예정가격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입찰 및 계약체결에서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정가격의 작성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먼저 동 조항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각호 순서(1,2,3)대로 가격을 결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에 대하여 동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먼저 거래실례가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거래실례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그 종류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으로서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을 말하며 현재는 한국물가정보센터의 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의 물가자료, 대한건설협회의 거래가격,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 유통물가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으로서 인정받는 가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가격을 2인이상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경우에도 거래실례 가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경우 조사가격의 적용은 최빈치 가격이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은 실적공사비에 관한내용이다

먼저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정가격의 작성**은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는 실적공사비에 관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text{직접공사비} = \text{공종별 수량} \times \text{단가}$$

직접공사비는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한다.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text{간접공사비} = \text{직접공사비}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비목별 요율}$$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간접공사비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비목별 요율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의미한다.

○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 ~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외에 공사 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하겠다. 🌻

